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2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46850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6779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감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24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8쪽 5행의 "제공될 수 없는"을 "제공되기 어려운"으로 수정

○ 9쪽 아래에서 8행의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임야이고 대지화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임야 상태에서 임대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대지화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부지조성을 하는 것은 임대업의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B이 G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부지조성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대지 상태로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B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허위가 아닌 진정한 계약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B, C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그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삼은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임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24

서 임대목적물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태이었고, B과 C이 부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무렵에도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목적물로 삼은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B 외 1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